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찬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178 발의연월일: 2025. 4. 28.

발 의 자: 박찬대·노종면·유동수

이훈기 • 허종식 • 모경종

맹성규 · 김교흥 · 임호선

김용만 · 진선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전속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해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전문법원으로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에 따라, 중 앙해양안전심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을 중앙해양안전심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에 전속하도록 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1항 및 안 제74조제5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80호),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4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5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9호) 제10176호),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1항 중 "고등법원"을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해사국제상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에 따라 해사국제상사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으로서 이 법 시행일 전날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아닌 법원에 계 속 중인 사건은 그 계속 중인 법원의 관할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74조(관할과 제소기간 및 그		
제한) ① 중앙심판원의 재결에	제한) ①		
대한 소송은 중앙심판원의 소			
재지를 관할하는 <u>고등법원</u> 에			
전속(專屬)한다.	법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제1항에 따른 해사국제상사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		
	원에 상고할 수 있다.		